

2024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2024. 1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 산 방 역 과

목 차

| | |
|---|-----------|
| I. 총칙 | 1 |
| 1. 목적 | 1 |
| 2. 용어 정의 | 1 |
| 3. 판매업자의 의무 및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 4 |
| 4.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적용 | 4 |
| II.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법령에 따른 판매업의 신고 · 5 | |
| 1. 규정 | 5 |
| 2. 판매업자의 의무 | 5 |
| III. 판매금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 6 |
| 1. 전자상거래 금지물품 | 6 |
| 2. 판매업자의 의무 | 7 |
| 3.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 7 |
| IV. 부당광고의 금지 | 8 |
| 1. 일반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8 |
| 2.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광고준수사항 | 16 |
| 3. 판매업자의 의무 및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 24 |
| V. 판매업자·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 26 |
| 1. 판매업자의 자율관리 | 26 |
| 2.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 28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확립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을(ALL) 바르게**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판매 금지 규정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은 어패류 및 관상어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 지정된 장소 판매**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수산질병관리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합니다.
- 유사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판매 금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불법판매 알선 및 광고 금지** 누구든지 1과 2에 위반되는 수산물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1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법 제44조~제50조, 형~제61조~제62조의2, 제85조제4항~제4항
 10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수입 및 유통 판매 규정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입업 신고를 하고 수입하려는 품목별로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수입·유통 절차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신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정상·유효성 문서가 없다고 인정 고지한 품목은 한국동물약품협회)
- 표준통관예정 보고**
 ✓ 관세청 (한국동물약품협회)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 사전 규정장 허가
- 수산질병관리원, 동물병원, 동물약국**
 ✓ 사전 규정장 개설등록

1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제42조~제48조, 형~제61조~제62조의2, 제85조제4항 이하의 벌금

국내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사례

| 금지 표현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과 유사한 명칭 표기 |
|-------|---|
| 금지 표현 | 예시) 백점종 약(품), 오디농 약(품), 구피 치료약(품), 열대어약(품), 수족관 약(품), 물갈이 약(품), 해수어 약(품), 니모 약(품) 등 |
| 금지 표현 | 의학적 효능·효과 등 표기 |
| 금지 표현 | 예시) 관상어 질병 예방, 백점종(흰반점) 구제제·방지제·치료제, 내부·외부기생충 예방제, 지느러미 꼬리 갈라짐 녹을 질병 예방 및 치료, 종합질병 예방제, 박테리아 감염증상 예방, 어병예방, 아가미병 예방 등 |
| 금지 표현 | 허위·과대 광고 표기 |
| 금지 표현 | 예시) 백점종(흰반점) 박멸에 강력한 효과 관상어 질병의 강력한 항균제, 만병통치약, 관상어 등 질병예방 및 강력한 개선효과 등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정보 확인은 “수산물의약품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시고 불법 판매신고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활용하세요.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센터를 통해 수산물의약품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

총칙

1

목적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사항 및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 조성 및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 정의

-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각 품목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이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을 말합니다.

법령 정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이란?

-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제85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어패류등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은 「약사법」 제85조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라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 1) 수산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 : 수산동물질병 방역을 목적으로 수산동물체(사체포함), 양어장 및 양어장 주변, 수산 동물운송 차량 및 기구, 오물, 수산동물용 음수(급수관 포함), 수산용 기구 등에 사용하는 소독제

□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릅니다.

법령 정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광고매체 또는 수단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4조(동물용의약품등의 광고의 범위 등)제1항
 1. 신문·방송 또는 잡지
 2. 전단·팸플렛·견본 또는 입장권
 3.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4.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5.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6. 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
 7. 자기의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다른 상품의 용기나 포장(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와 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표시나 기재사항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

- 판매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사 또는 불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을 소비자 등에게 판매할 수 있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오픈마켓 운영사업자)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사 또는 불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을 다른 개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개인간 오픈마켓 운영사업자)
- 소비자 등이 유사 또는 불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가격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가상공간의 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격비교사이트 운영사업자)

-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 등에게 유사 또는 불법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외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SNS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블로그 운영사업자 등)
-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 등에게 유사 또는 불법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외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관련 법령”이란 「약사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을 말합니다.
※ 동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였습니다.

3 판매업자의 의무 및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제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적용

-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어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내용과 상이할 경우 판매업자는 제·개정된 법령을 따른다.

예 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 개정되어 동물용의약외품을 광고할 때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II

동물용의약품등 법령에 따른 판매업의 신고

1

규정

-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50조(의약품 판매) 및 제85조(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해당되는 자만 판매할 수 있으며,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인터넷)에서는 판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외품은 판매업과 관련하여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별도의 자격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판매업자의 의무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자는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 등록을 해야하고, 「약사법」 제85조(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수산물질병관리법」(제37조의12) 및 「수의사법」 제17조(개설)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Ⅲ

판매금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1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물품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수산질병관리원, 동물병원, 동물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금지됩니다.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2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상어용 동물용의약품, 처방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대상 관상어용 동물용 의약품으로 표시된 의약품

□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 「약사법」 제65조에 따른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위반한 수산용의약외품
- 「약사법」 제65조의2에 따른 외부 포장 기재사항을 위반한 수산용의약외품
- 「약사법」 제65조의3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위반한 수산용의약외품
- 「약사법」 제65조의4에 따른 기재상의 주의를 위반한 수산용의약외품
- 「약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수산용의약외품

2 판매업자의 의무

- 판매업자는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판매금지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등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 판매업자는 판매하려는 제품이 제3장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품목에 해당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판매금지 제품인 경우, 판매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3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 판매업자가 제3장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품목에 관한 판매정보를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등록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그 정보를 즉시 비공개 처리 또는 삭제하고, 지체없이 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공개 처리 또는 삭제에 관한 고지를 받은 판매업자는 해당 정보가 판매금지 품목에 대한 판매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고, 그 정보의 공개 또는 복구를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의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에 지체없이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제3장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V

부당광고 금지

1

일반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사업자가 자신에 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하는 행위

가격에 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 ※ 창업 또는 개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을 할인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시가를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원재료, 성분에 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①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②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③ 실제로는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④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이 수입된 것을 완제품이 수입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⑤ 부원재료나 성분을 가지고 전체의 주된 성분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품질, 성능, 효능에 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①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해당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②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 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③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인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④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⑤ 특허 등록 자체가 상품의 성능·효능이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도 특허등록 사실 그 자체만으로 성능·효능의 우수성 또는 안전성 등을 광고하는 경우

규격, 용량, 수량에 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일정한 기준규격 또는 기준용량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①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격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② 실제 용량 또는 수량과 다르게 용량 또는 수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③ 용량을 실제보다 크게 나타내기 위하여 외형의 크기를 내형의 크기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원산지 및 제조자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①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출 불합격품 또는 수출반품을 포함한다) 외국문자, 외국어 등으로만 표시·광고함으로써 그 표시·광고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국내에서 제조되었더라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그 해당 국가의 언어나 문자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②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을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의 문자, 국기 등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면서 실제 원산지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식별하기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이라도 원산지가 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해당 제품이 국산품인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 외국 상표나 외국제조회사의 명칭만 표시·광고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사실은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이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외국회사와 기술 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그 해당 국가의 상표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일부 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제로는 국내에서 제조, 조립 또는 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제조업자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행위. 단, 일부 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제로는 국내에서 제조·조립 또는 가공되었어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그 해당 국가인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자기가 제조하는 상품에 타사업자의 상표나 상호를 표시·광고하여 타사업자가 제조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타사업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광고함으로써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제조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 ⑥ 국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해당 상품이 국내 유명산지에서 생산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 ⑦ 제조자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구입·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사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보증에 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보증·품질 사후관리(A/S)에 관하여 표시·광고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추천, 권장 등에 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추천, 권장 등의 사실을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 ①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 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② 해당 상품 등을 실제로 구입·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③ 해당 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해당

부문 전문가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④ 참가상 또는 순번상을 품질이 우수함으로 인하여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⑤ 부분적인 품질 또는 규격과 관련한 상을 전품질 또는 전규격의 상을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⑥ 수상자가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당 수상자가 생산, 조립, 가공, 제작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또는 현저히 멸실되기 쉬운 형태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 특히, 안전과 관련되는 상품 등의 경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사용상의 오인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상품의 보존기간 동안 존속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 행위

□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제조업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 상품 등의 품질·종류·수량 등에 관한 정보,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사용방법·유효기간·보증 등 상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등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한 것을 말한다.

- ① 제조자·판매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 ✓ 제조자·판매자·가공업자·중간유통업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② 제품의 품질·종류·수량·원산지(재배지 등)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 ✓ 제품 등의 품질·종류·수량 등에 관한 중요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③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 ✓ 제품 등의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중요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④ 제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은폐 또는 누락
 - ✓ 제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⑤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을 은폐 또는 누락
 - ✓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하에서만 해당 표시·광고에서 주장 또는 제시하는 결과·효과(효능) 등을 거두거나 성능·기준 등을 달성할 수 있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충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누락 또는 은폐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제품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 등의 제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가) 비교대상에 관한 사항

- 비교대상인 상품이 자기의 상품과 용량, 크기, 생산시기, 등급, 특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 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교대상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제품이 경쟁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 비교대상인 제품이 가격·품질·성능·소비자인지도 등에 있어 경쟁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비교기준에 관한 사항

- 서로 다른 조건, 기간, 환경 등 동일하지 아니한 기준에 의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이 당해 표시·광고상 비교기준과 불가분의 직접적 관계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비교내용에 관한 사항

-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허위·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해서 허위·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여 비교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교사항의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아주 근소하여 성능이나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 비교방법에 관한 사항

- 특정항목, 특정조건 등에서의 비교결과를 근거로 전체적인 우수성을 주장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시험·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 시험·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자기의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2

동물용의약품등의 광고준수사항(취급규칙 별표 7)

- 동물용의약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또는 용법 등에 관하여 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수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 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명시할 것
- 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하여 공인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
- 인체약품 또는 인체용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의약품 등에서만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 의약품 등에 포함되거나, 의약품 등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 의약품 등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포함
- 효능 또는 성능에 있어서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내용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물용의약품등의 사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인하는 광고
 -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
- 동물용의약품등에 관하여 의사, 동물관계학자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다른 동물용의약품등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될 광고 또는 다른 제품과 유사하다거나 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다른 제품과의 비교실험 결과를 인정한 내용을 비교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른 제품의 성능 및 효능·효과, 적용 기술, 원료, 가격 등에 대해 불리한 내용을 부각하는 표현 사용 불가

○ 국산제품임에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외국어로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외국 상표를 사용한 광고 또는 외국의 제조업자와 기술 제휴를 한 것임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령에 따라 외국 상표를 사용하였거나 외국의 제조업자와 기술제휴를 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 업체와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동물용의약품등을 오용 또는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동물용의약품등과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 등이 사실일지라도 불안감, 공포감 등을 조성할 수 있는 표현 사용 불가

○ 현상품 및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말 것

-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의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옥외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및 효능·효과만을 표시할 것

○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연이어 부르는 방법에 의한 광고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한 광고를 하지 말 것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광고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부원재료나 일부 성분을 전체의 주된 성분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실제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과장하는 행위
- 부작용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있어서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 것
-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동물용의약품에서만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 동물용의약품에 포함되거나, 동물용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 동물용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포함

부적합 사례

- 동물용의약품(특정 질병 예방제)으로 질병(백점병 등)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재한 표시·광고

○ 백점병 예방제

-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질병명 또는 '예방' 단어를 사용한 표시·광고



백점예방제

백점병 예방제?

특징

- 백점병 및 뱃벌레, 물어, 수생충 등을 방지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방법

- 백점충 제거시 : 물40L에 1캡(10ml) 기준으로, 1차 투여후 3일뒤 1회 재투여 합니다.
-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월1회 사용합니다.

어항 물 40리터에 1캡(10ml) 사용 (1캡은 제품 마개입니다)
 어항 물양 계산법 : 어항 가로x세로x높이(cm) / 1000



특징

박테리아 혈액번식, 균상증, 원인균과 바이러스를 포함한 박테리아를 죽이는 강력한 광역(항균) 스펙트럼 효과와 더불어 물고기의 백점병, 레드스킨병, 아가미 썩음병, 비늘수직병(솔방울병), 아가미 곰팡이병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적당량을 처방하면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사례

- 동물용의약품(백점병 구제제)으로 특정 질병의 구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재한 표시·광고

- 백점병 구제제
- 의학적인 효능·효과 등 표시·광고



백점 구제액 110ml

| | |
|------|--------------|
| 품명 | 백점 구제액 110ml |
| 용량 | 110ml |
| 주성분 | e-zyme외 1종 |
| 원산지 | 대한민국 |
| 유통기한 | 제품별 상이 |

사용방법

열대어의 이동이나 합사시에 기생충 및 세균 등에 감염 되었을 때 사용하세요

작은 수조 기준 : 용기 두께으로 3~5ml
 2차 어항(60cm) 기준 : 용기 두께으로 10~15ml
 (어항 크기 및 폭에 따라 증량해 사용하세요 / 1 두께 : 5ml)

주요특징

수중의 세균과 외부 기생충의 침입을 차단시키는 자연 살균 효소제 2종으로 구성 / 세균과 기생충을 제거하여 열대어 보호



(세균, 백점충구제)



120ml

▶ EXTERNAL PARASITE REMEDIES

- 수중의 세균과 외부 기생충의 침입을 차단시키는 천연 살균 효소제 제 2종으로 구성
- 기 침투한 세균과 외부 기생충을 강력한 살균력으로 파괴
- 100% 천연 추출물로 인체와 어류에게 해롭지않음
-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

* 어류의 이동이나 합사시, 백점충 등 외부 기생충 또는 세균에 감염 되었을때 수조 물 10L 당 5ml(1두께)씩 넣으십시오.

부적합 사례

- 의학적인 효능·효과 등 표기하여 증상을 완화·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재한 표시·광고

| | |
|---|--|
| <p>○ 관상어 질병 예방·완화하는 항진균제</p> <p>-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사용한 표시·광고</p> |  <p>관상어의 곰팡이성 질환 증상 완화·예방</p> <p>.....는 관상어의 곰팡이성 질환을 예방 완화하는 100%천연 항진균제입니다.</p> <p>용량 : 4oz(118ml) / 8oz(237ml) / 16oz(473ml) / 64oz(1.89l)</p> <p>.....는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상어에 곰팡이성 질환 증상이 발견되었을 때 ○ 관상어의 내,외부 세균 감염뿐만 아니라, 발진 등 피부 전반적인 이상 증상 발생 시 <p>.....의 중요한 특징</p> <p>.....는 West Indian Bay Tree에서 추출한 100% 천연성분을 이용한 관상어 곰팡이 감염 항진균제입니다.는 내/외부 세균 감염, 마우스병거스, 각 부위의 곰팡이 질환, 피부 발진 등의 증상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게 병의 진행을 막아줍니다. 또한는 생물학적 여과에 악영향을 전혀 주지 않으며, pH나 물 색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과를 병행하여 사용하면 질병에 대한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p> |
| |  <p>.....는 필터에도 안전한 기생충 관리제입니다.</p> <p>사용법이 애매하고 독성이 강해 위험한 포르말린과 달리 폼알데히드나 메탄올을 첨가하고 있지 않고 pH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p> <p>파라가드는 모든 종류의 외부기생충, 곰팡이, 박테리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해주며 지느러미가 녹는 현상을 막아줍니다.</p> <p>백점병(白點病): 섬모 원생(纖毛原生)에 의해 발생하는 열대어의 병, 지느러미, 피부, 눈의 작은 혹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질병의 초기 발생시 사용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초기입수시 검역에 가장 유용합니다.</p> <p>사용법: 5 mL (1 capful, 제품의 뚜껑)의 파라가드를 40리터의 수조 물에 사용합니다. 4일정도 약욕과정을 보면서 호전현상이 보이면 환수를 시작하고, 반대의 경우는 5ml를 더 추가로 넣습니다.</p> |

부적합 사례

- '약'이라는 단어를 사용 및 의학적인 효능·효과 등 표기하여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재한 표시·광고

| | |
|---|--|
| <p>○ 광범위 항균총제 -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사용한 표시·광고</p> |  <p>수용성 항균총제</p> <p>관상어질병의 세균성 수지에 강력한 항균총제로서 각종약제들에 의해 내성이 있는 수조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모든 어항은 용이 원인이므로 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해주는 고효능 항균총제이며 타약품으로 치료후에 재발된 각종 세균성 수질에 우수한 효능을 발휘하여 치어, 성어에 대한 개선 안전성이 높고 잔류 기간이 짧으며 내성 발현이 전혀없는 광범위 항균총제입니다.</p> <p>용법·용량</p> <p>물갈이 후나 병이 발병했을 때 4자 어항 (160L)를 기준으로 본제 1포(10G)를 어항 수면에 골고루 뿌려주고 심할 경우 3일 뒤 한번 더 두어줍니다. 예방은 한달에 한번 두어해 주면 관상어가 건강해집니다.</p> |
| <p>○ 물갈이약(품) -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사용한 표시·광고</p> | <p>물갈이약 점막보호</p> <p>수돗물에서 염소, 클로라민 및 중금속을 쉽게 제거 하며 열대어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점막을 강화하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프리미엄 올인원 수질개선제.</p>  |

- 동물용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3 판매업자의 의무 및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 판매업자의 의무

- 판매업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 판매업자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판매업자는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의 판매를 알선 하거나 광고해서는 안됩니다.
- 판매업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제5장 부당광고 금지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 및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예 시

-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자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부당 광고한 경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 판매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등록하여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이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등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등을 할 때까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매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등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등을 완료하고, 그 사실을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 등이 그 제품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개한다. 다만,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VI

판매업자 ·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1

판매업자의 자율관리

□ 모니터링

-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유사 또는 불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제3장에 따라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판매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4장에 따라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광고 게시물이 부당 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판매업자는 다음의 누리집을 통해 수산용동물용의약품 인·허가 등의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허가정보 확인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리시스템

↳ 【검색위치】 <https://nfqs.go.rk/apms/index.ad> → 수산용의약품 검색 → 약품편람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정보검색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누리집

↳ 【검색위치】 <https://kapha.or.kr> → 정보서비스 → 제품명 검색

□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판매업자는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되며,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검색 키워드를 등록하는 경우, 질병명칭 및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등 문구를 사용하여 등록하지 않습니다(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금칙어 목록 참고).

- 판매업자는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광고내용 수정 및 판매 중단 등을 조치합니다.
- 판매업자는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개선조치 등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선조치 등 요청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절차는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내부 규정을 따릅니다).
- 판매업자는 조치한 내용 등에 대해 유사사례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TIP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금칙어 목록('24.10월 기준)

- **(불법약품 브랜드)** 멜라픽스, 피마픽스, 터틀픽시, 네이처팜, 수마(SUMA), Aolaite, 큐프라민, 파라가드, 원터치 등
- **(유사한 명칭 표기)** 백점병 약(품), 오디늄약(품), 구피치료약(품), 열대어약(품), 수족관약(품), 물갈이약(품), 질병치료제약(품), 물고기약(품), 해수어약(품), 관상어약(품), 니모약(품) 등
- **(의학적인 효능·효과 등 표기)** 관상어 질병예방, 백점충(흰반점) 구제제·방지제·치료제, 내부·외부기생충 예방·구제제, 지느러미 꼬리 갈라짐 녹음 질병 예방 및 치료, 닳벌레·백점병·기생충 감염 방지, 종합질병 예방제, 박테리아 감염 증상 예방, 어병예방, 아가미병 예방 등
- **(허위·과대 광고 표기)** 백점충(흰반점) 박멸에 강력한 효과, 관상어 질병의 강력한 항균충제, 만병통치약, 관상어 등 질병예방 및 강력한 개선효과 등

2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 모니터링

-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등록된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정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항을 적시하여 자신의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거래 차단 등을 요청한 경우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TIP 판매금지, 부당광고 사례

- 판매업자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 판매업자가 해외에서 수산동물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구매 대행
- 판매업자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해외직구 제품을 수산생물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여 광고
- 판매업자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백점충 구제제, 외부기생충 치료제 등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처럼 광고

□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조치사항

가. 자율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등

-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등록된 유사 또는 불법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정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제품에 관한 거래를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판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판매업자는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중지를 통지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판매업자가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거래를 재개시킨다. 다만, 거래 재개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약관 등을 통해 이의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가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 해당 제품에 관한 거래를 재개시킬 수 있습니다.
- 해당 불법행위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에 문의한 후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조치 등

-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유사 또는 판매금지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거래를 중지시킨 경우,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판매업자 및 이를 요청한 행정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판매업자는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중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이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사실을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사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의 거래를 재개시킨다. 다만, 거래 재개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요청한 조치에 대해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가 문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조치를 취한다.

다. 반복 또는 중대한 위반의 판매업자에 대한 불이익 등의 조치 등

- 판매업자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판매금지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시하여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그 정보의 시정 또는 삭제 등을 요구받거나 비공개 또는 삭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판매업자에게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업자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 1회 위반으로도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수산물 동물용의약품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에 관한 판매업자 및 온라인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기본요건 및 자율관리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작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에도 불구하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4년 10월 현재 유효한 법규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법령 제·개정내용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 방역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51-400-5653

팩스번호 : 051-400-5688

담당자 이메일 : ha95721@korea.kr